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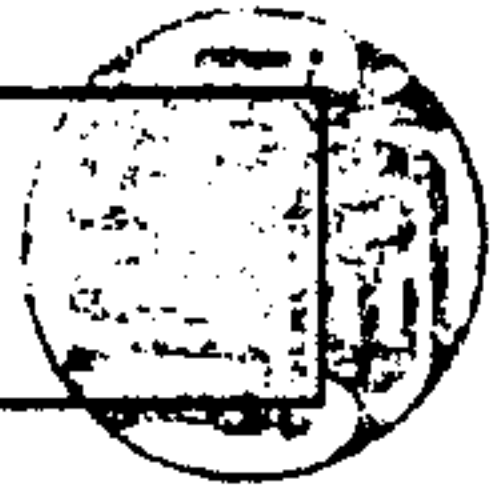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제 49 호
의 결 년 월 일	1998년 11월 27일 (제 79 회)

의결사항
원안가결

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출 년 월 일	1998. 11. 24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

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
49

제출년월일 : 1998년 11월 24일
제 출 자 : 보은군수

1. 제안이유

‘98. 9. 26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7조 제1항 (별지 1호)서식중 “보은군 수도계 (40-3521)”를 “보은군 물관리담당(540-3336)”으로 한다

3. 근거법령 :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



4. 사전입법예고결과 : 해당없음

붙임 1.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2. 신구조문대비표(별지1호서식)

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 “(별지 1호)”서식중 “보은군 수도계(40-3521)”를 “보은군 물관리담당(540-3336)”으로 하며 “별표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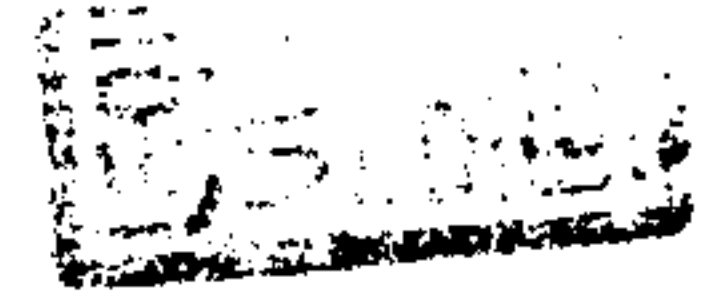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(현행)

간이상수도 안내판 (제7조 제1항 관련)

← 100cm →				
알 림				
1.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원입니다. 2.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● 관리번호 : ● 위 치 : ● 시설용량 : ◆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: 보은군 수도계(40-3521) 				
199 년 월 일 보 은 군				

- 재질 및 두께 : 3mm내외의 철판
- 바탕 색 : 흰색
- 글 씨 : 청색

(별지 제1호 서식)(개정안)

간이상수도 안내판 (제7조 제1항 관련)

100cm					
알 림					
1.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원입니다. 2.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60cm
● 관리번호 : ● 위 치 : ● 시설용량 :					
					
◆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: 보은군 물관리담당(540-3336)					
199 년 월 일					
보 은 군					
					120cm
					50cm

- 재질 및 두께 : 3mm내외의 철판
- 바탕 색 : 흰색
- 글 씨 : 청색